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16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20누39053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 주식회사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[redacted]
	담당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구합69315 판결
변 론 종 결	2020. 7. 9.
판 결 선 고	2020. 8. 13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9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[별지1]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대한 취득세 등 128,818,400원에 관한 경정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16

청구 거부처분 중 88,492,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판사 [redacted]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16

[별지1]

목록

1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[redacted]시 [redacted]구 B, C, D. E에 있는 F건물

[도로명 주소] [redacted]시 [redacted]구 G

철골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 기타지붕 8층 업무시설(오피스텔) 및 근린생활시설

지하 4층 4,014.63㎡

지하 3층 4,308.18㎡

지하 2층 4,321.52㎡

지하 1층 4,105.144㎡

1층 2,275.52㎡

2층~4층 각 2,456.01㎡

5층 2,307.43㎡

6층 2,133.82㎡

7층 1,867.63㎡

8층 1,733.89㎡

옥탑1층 129.64㎡(연면적 제외)

옥탑2층 84.38㎡(연면적 제외)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B 2,333.4㎡
2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C 2,310.8㎡
3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D 608.7㎡
4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E 453.2㎡
5. [redacted]시 [redacted]구 H 196.7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층 I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6.86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5,902.8분의 18.609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16

2. (1동의 건물의 표시)
전항과 동일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전항과 동일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제1층 J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7.35㎡

(대지권의 표시)
소유권대지권 5,902.8분의 18.770

3. (1동의 건물의 표시)
전항과 동일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전항과 동일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제1층 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6.8㎡

(대지권의 표시)
소유권대지권 5,902.8분의 15.3165

4. (1동의 건물의 표시)
전항과 동일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전항과 동일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제1층 L호 철근콘크리트구조 46.8㎡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11-16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5902.8분의 15.3165

5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전항과 동일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전항과 동일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층 M호 철근콘크리트구조 51.58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5902.8분의 16.881. 끝.